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기관 폐업·휴업 직접안내 의무화〉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20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0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18.

(3) 회 부 일 : 2025. 8.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

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해야 하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직접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항).

현행	개정안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 ③ (생략)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1.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 부동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내하는 조치.

<신 설> ⑤ (생 략)	<u>이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u> <u>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u> <u>받은 환자에게는 전화통화, 문</u> <u>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직접</u> <u>안내하여야 한다.</u> <u>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u> <u>하는 조치</u> ⑤ (현행과 같음)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40조제4항¹⁾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휴업 시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1)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입원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전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예정일 30일 전까지 안내문의 내용을 직접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²⁾

법 제40조의2³⁾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 가능), 제40조의3⁴⁾에서 이 경우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계획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 보관 중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기간,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기록 열람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업 또는 휴업 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환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⁵⁾

□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현행법령에 따른 안내가 환자들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등 이관이 제대로

③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한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보건소 및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기록부등의 형태를 변경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으며,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5. 제33조제5항·제7항·제9항·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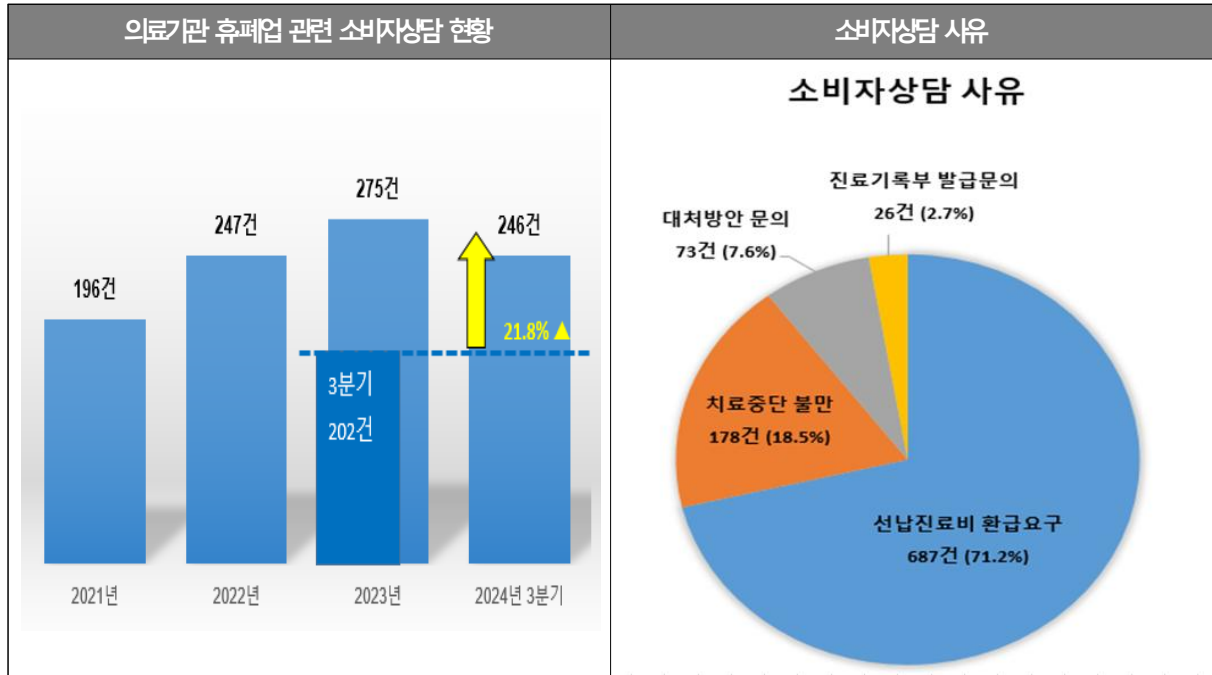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이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보아, 현행 시행규칙 상 폐업 또는 휴업 시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 발급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하여 선납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96건에서 2023년 27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3분기까지 접수건수는 246건으로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하였음.

이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기관 휴·폐업 전 안내문 게시 의무가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료기관 휴·폐업 전 충분한 정보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힘.

<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



자료: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4.11.22.),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또한, 폐업 의료기관은 매년 2천개소 이상 발생하고 있는 반면,⁶⁾ 최근 10년간 폐업 시 환자권익보호조치 위반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2건⁷⁾에 불과함. 이는 환자권익보호조치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현행법령에 따라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2주간의 게시 의무는 외래환자가 인지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휴업·폐업 사실을 직접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의료기관 휴·폐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21년 2,399개소, '22년 2,402개소, '23년 2,522개소, '24년 2,408개소(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폐업 현황, 보건소·약국·조산원 제외)

7)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 다만, '1년 이내 환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재정 부담의 과도함을 넘어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⁸⁾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0년 2월 제20대 국회에서, 의료기관이 휴·폐업한 경우에도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되고 환자들이 진료기록부를 편리하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현행 제40조의2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현행 제40조의3 신설) 내용으로 「의료법」을 일부개정한 바 있음.
- 동 개정법률은 2023년 3월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 7월 동 시스템을 개통하였음(참고자료).
 - 진료기록부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의료기관 폐업으로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⁹⁾이 발의되었으나, 심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8) 대한의사협회

9) 제20대국회: 의안번호 2024248, 진선미의원 대표발의(2019.12.11. 발의, 2020.5.29. 임기만료폐기)
제21대국회: 의안번호 2100569, 진선미의원 대표발의(2020.6.16. 발의, 2020.7.15. 상정, 2024.5.29. 임기만료폐기)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 의료기관 휴·폐업 시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 또는 직접(입원환자의 경우) 알리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
-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위반 시의 행정처분 및 벌칙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대한의사협회 (반대)

-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환자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1년 이내 환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재정 부담의 과도함을 넘어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함.
- 경영상 어려움, 질병, 사망, 임대차 종료 등 다양한 이유로 급하게 폐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자 연락망 확보 및 통보에 수주 이상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폐업 절차를 지연시키는 규제로 작동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안내문자발송·전산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비용을 사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환자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 위험이 있고, 다른 서비스업종과 비교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전원 개별 연락’을 의무화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음.
-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행정 편의 및 보건소 내 진료기록부등 보관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건소가 이관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은 현실이며, 2025.07.21.부터 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 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직접 전자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고, 이 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므로 진료기록부 보관을 위한 대안이 존재함.

3)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대)

- 치과의원의 경우 대부분 1인 원장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전담 행정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휴·폐업시 문자 발송이나 전화 등의 개별 통보는 상당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크므로 반대함.
- 또한, 환자의 연락처 오기재나 변경, 수신 차단인 경우 연락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송·이력 보관 등의 입증 책임이 의료기관에게 전가될 우려가 큼.
- 휴·폐업시 진료기록부는 보건소에서 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소 자체 시설이 부족하여 개설자가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보건소 시설 확충을 통해 보건소가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적 인지도가 낮은 실정임. 특히 고령층은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요구되며,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4)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현행 의료법에 폐업·휴업 예정일 안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환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1년 이내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

□ 추진배경

- 의료법상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 제출 또는 보건소장 허가 하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 가능
 - (보건소) 진료기록 관리인력·규정 부재, 종이 또는 보조저장장치 형태의 진료기록 보관공간 협소 등으로 보관·관리·파기 미흡
 -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체 보관하는 경우, 민원인이 개설자 소재지 파악, 연락이 어려워 과거 진료기록 발급 제한
- * 휴·폐업 의료기관(약 2,500개소) 중 진료기록의 보건소 이관 비율은 '16년~'20년 평균 8% → '20년에는 12%로 증가추세('21년 진료기록보관시스템 ISP/BPR 보고서)
- 진료기록 부실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정보 유출, 진료기록 발급 제한 해소를 위한 전자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외부기관 주요 지적 사례 >

- ('20년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암 유발 인공유방 시술 병원 폐업, 200여 개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 불가
- ('19년 국정감사, 진선미 의원)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 등으로 진료기록부 분실, 비급여 시술받은 환자 정보 확인 불가 등 보상 절차에 어려움 발생
- ('16년 감사원, 전국 20개 보건소 실태조사 결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일반 행정문서와 함께 보관·방치하여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 추진경과

- 의료법 개정을 통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20.3월)
 - *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 ('23.3.4. 시행)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BPR/ISP) 수립('21.4월~10월)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관련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3.3월)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23.10월~'25.8월, '25.7월 개통)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 (개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 중인 진료기록의 이관·보관·발급·파기 등 단계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사업 주요내용 >

- (기간) '23.10월~'25.8월
- (예산) 6,385백만원(1차 2,470백만원, 2차 3,915백만원)
- (1차년도, 계약기간: '23.10.~'24.8.)
 - 표준서식 정의 및 이관 데이터 항목 정의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이관 모듈 개발 및 적용(EMR 2종)
 - 보건소, 의료기관 대상 진료기록보관 업무지원 시스템 개발 등
- (2차년도, 계약기간: '24.7.~'25.8.)
 - 이관 데이터 범위 확대 및 스캔문서 이관·관리 기능개발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이관 모듈 적용 확대(EMR 2→7종)
 - 보건소, 의료기관 대상 진료기록보관 업무지원 시스템 기능개선
 - 진료기록 발급기능 등 대국민 포털 개발 등

- (목적)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 관리를 통해 행정효율성 제고, 의료안전망 강화 및 국민의 권리 보장

○ 주요기능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의료기관의 휴·폐업 진료기록* 이관신청, 시스템 이관 확인, 진료기록 보관·발급·파기 등 관리
- * 발급수요가 높은 17종 공통 서식 및 사본 발급에 필요한 진료정보 이관
- (대민포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열람, 발급 등

□ 기대효과

- (국민)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 증진 및 개인 의료정보 보안 강화
- (보건소) 진료기록 관리, 사본발급 민원 대응 행정비용 및 노력 절감
- (의료인) 의료기관 폐업 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발급 요청 시 대응 편의, 자체 보관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부담 완화